

工業所有權 相談解説

特許權의 實施와 他法과의 關係

金 永 吉

<辨 理 士>

問 ① 特許받은 技術로 製品을 生産하고자 諸般準備를 完了하고 生産을 始作하고자 하였으나 製品生産을 爲해서는 다른 法에서의 許可를 얻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特許를 받았는데도 다른 法の 許可를 또 받아야 합니까?

② 우리나라에서 登錄된 意匠權을 外國에서도 權利主張이 可能한지요. 그 反對의 경우는 어떨지요?

答 ① 特許權이 부여되면 特許權者는 그 特許權을 一定期間 獨占的으로 實施할 수가 있으며 이 實施를 實效있게 하기 爲하여 法的保護 手段도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獨占的인 特許權이 發生하였다고 하여 他法을 排除하면서까지 實施를 許여한다는 內容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特許法이 他法에 우선하여 適用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實施와 關聯된 他法의 規定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工產品品質管理法 第6條에서는 公共의 利益과 消費者를 保護하기 爲하여 그 工產品에 對하여 一定한 規格에 適合하게 生産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또 食品衛生法 第8條에서는 國民保健의 向上과 增進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上記의 關聯한 特許權만을 獲得하였다고 하여 이들 規定을 無視하고 그 特許權을 任意로 實施한다면 關聯規定에 依據處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特許權은 어떤 新技術에 對하여 獨占權을 賦與하는 것이므로 이 技術의 實施에 關聯된 他法의 認可나 許可等을 得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規定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特許權者는 實施하기 前에 實施와 關聯된 그 分野의 他法의 規定과 抵觸되는지를 事전에 면밀히 調査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막대한 資本을 投資하여 그에 相應하는 事業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만큼 財産의 損失이 크기 때문입니다.

② 意匠權은 그 權利를 부여한 國家內에서만 效力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登錄된 意匠權은 우리나라 內에서만 權利를 主張할 수 있으며 外國에까지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파리條約의 基本原則이므로 모든 同盟國은 이 原則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外國에서도 意匠權을 주장하고자 할때는 그 나라에 別途의 登錄을 받아야 합니다. 外國에서 登錄받은 意匠權이라도 우리나라에서 登錄을 받지 않았다면 勿論 效力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原則은 特許, 實用新案, 商標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